

과 세 이 연 신 청 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신 청 내 용

⑥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(전환전사업의 자산, 대토보상, 기존공장, 종전보육시설) 양도 명세	

⑦ 자산명	⑧ 소재지	⑨ 면적(m ²)·수량(개)	⑩ 양도일	⑪ 양도가액	⑫ 취득가액등
합 계					

(전환사업의 자산, 대토보상, 지방공장, 신규보육시설) 취득(예정) 명세

⑬ 자산명	⑭ 소재지	⑮ 면적(m ²)·수량(개)	⑯ 취득일	⑰ 취득(예정)가액	⑱ 이연취득가액 (⑰ - ⑫)
합 계					
양도소득세	⑲ 과세이연 금액 [(⑪-⑫)×⑰÷⑩]		⑳ 과세이연 세액 (⑲×세율)		

[]제30조제12항
 「조세특례제한법 []제73조제6항
 시행령」 []제79조의3제9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[]제79조의6제7항

제 출 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2. "㉗ 자산명"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고, "㉘ 자산명"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습니다.
3. "㉙ 양도가액"란에는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4. "㉚ 취득가액등"란에는 사업전환, 공장지방이전, 보육시설대체의 경우는 [취득가액+그 밖의 필요경비]를 적고, 대토보상의 경우는 [취득가액+그 밖의 필요경비+장기보유특별공제액]을 적습니다.
5. "㉛ 이연취득가액"란에는 "㉜ 취득(예정)가액"에서 "㉝ 과세이연 금액"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㉜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㉛·㉝란에 적지 않습니다.
6. ㉞ 과세이연금액 계산 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.

가.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3조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㉙ \text{ 양도가액} - ㉚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㉜ \text{ 전환사업의 자산취득(예정)가액}}{㉙ \text{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}}$$

나.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2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㉙ \text{ 양도가액} - ㉚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㉜ \text{ 지방공장의 취득(예정)가액}}{㉙ \text{ 기존공장의 양도가액}} \times \left(1 - \frac{㉝ \text{ 지방공장면적} - ㉞ \text{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}}{㉞ \text{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}}\right)$$

다.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5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㉙ \text{ 양도가액} - ㉚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㉜ \text{ 신규보육시설의 취득(예정)가액}}{㉙ \text{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}}$$

라.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의2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㉙ \text{ 양도가액} - ㉚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㉜ \text{ 대토보상상당액}}{㉙ \text{ 총보상액}}$$

7. "㉟ 과세이연세액"란에는 ㉞ 과세이연금액에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